

# 심사보고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0
----------	-----

2024. 6. 11.  
자치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5. 31. / 정현미 의원 등 9명  
나. 회부일자 : 2024. 5.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6. 11.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등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춰 관련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이 표기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국가유산 체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문화재 용어 등을 개정 (안 제1조~제13조)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 시행되어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남양주시 13개 조례의 문화재 용어 및 관련법 인용 조문이 표기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안건으로,

자연물과 사람을 문화재로 표현한 기존 용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상이했던 분류체계를 전환·정비함으로써 ‘국가유산’ 용어의 조기 정착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부.